

학교법인 송의학원과 각급학교의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 감 사 보 고 서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 사 김 학 선

감 사 박 동 진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11556호)

# 목 차

2021학년도 감사보고서 ..... 1 쪽

학사 운영 및 행정감사 결과 보고 ..... 2~5 쪽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 6~ 8 쪽

## 2021년 감사보고서

###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승의학원 및 승의여자대학교의 2021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승의학원 및 승의여자대학교 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승의학원 및 승의여자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사 및 행정 업무 감사의 건의 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2022년 4월 8일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 김학선  
감사 박동진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  
직명 승의여자대학교 총장 박성희

## 2021학년도 학사업무 및 행정감사 소견

- 감사 기간 : 2022년 4월 4일 ~ 4월 8일 (5일간)
- 대상 기관 : 학교법인 송의학원의 법인사무국, 송의여자대학교 부설 유치원, 송의초등학교, 송의여자중학교, 송의여자고등학교, 송의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포함)
- 대상 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 □ 학교법인

- 학교법인 재산상황, 법인회계,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 별첨1 - 학교법인 송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 [양호 / 권면]

-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을 규정에 따라 준수하였으며, 개최 정족수가 모두 충족되어 있었음
- 이사회 소집 목적에 맞게 심의 안건의 진행과 절차가 적정하게 잘 처리되었음
- 이사회 소집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의안이 부의되어 심의 의결된 사례가 없음
- 이사회 회의록이 잘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으며, 홈페이지(송의여자대학교)에도 공개되어 있음
- 신임 이사장 선임에 따른 이사회 소집과 회의 진행, 절차가 법인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승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도 잘 갖춰져 있음(이사회 회의록 2021-8차)
- 임기 만료에 따른 감사 선임이 법인 정관 19조에 의거 이사회 회의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서류들 또한 잘 구비되어 있음(이사회 회의록 2021-11차)
- 임기 만료에 따른 송의여자대학교 총장 및 송의여자중학교 교장과 교감, 송의초등학교 교장 과 교감 임면에 따른 이사회 소집과 진행 및 절차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음

○각 학교별 교원 임면에 대한 이사회 소집과 진행 및 절차가 정관에 맞게 잘 처리되었음

○법인 정관 변경은 발생 사유 보고와 함께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정관에 바로 수정 반영되었음

#### □ **송의여자대학교 부설 유치원**

##### [양호 / 권면]

○유치원 교육과정운영계획과 교육평가가 잘 짜여져 시행되고 있었음

○유아들의 안전과 재난대비 훈련 교육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었음

○학급경영록, 유아관찰기록부, 입·퇴원 기록부 등이 잘 되어 있음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회규정이 구성 및 운영 등에서 미비한 면이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 **송의초등학교**

##### [양호 / 권면]

○교원 인사에 관한 절차와 과정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서류와 기록카드 관리 상태 또한 양호함

○학교운영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운영되고 있었으며, 안전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회의록 작성과 홈페이지 공개도 잘 되었음

○신입생 모집에 따른 준비와 절차, 과정이 적법하면서도 공정하게 관리되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들도 잘 보관되어 있었음

○학생 안전에 따른 시설 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지도 잘 관리되고 있음

○물품 관리가 대장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폐기 처리도 적법한 결재 과정을 거쳐 에듀과인으로 잘 처리되고 있었음

○학교의 중요 서류인 출석부와 학교생활기록부 등이 잘 기록되어 보관되어 있고, 생활기록부 정정은 정정 대장을 통해 기록과 결재 과정이 잘 나타나 있음

◇교원 임면에 따른 인사 관련 서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서류는 시기와 순서에 맞게 묶어 별도 보관하기를 권장함

## □승의여자중학교

### [양호 / 권면]

[양호/권면]

○신규 교사 채용에 따른 준비와 과정, 절차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서류접수, 전형에 이르기까지 매뉴얼에 의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근거 서류도 잘 구비되어 있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잘 되어 있으며, 회의록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도 규정에 맞게 잘 되고 있었음

○학생들의 학업 평가와 처리가 학교 규정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에 따라 잘 관리되었음

○신규 학교장 인계·인수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관련 서류도 잘 보관되고 있음

○학교 물품 관리 기록이 잘 되어 있으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도 잘 기록되어 있음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교원의 승급 등 변동 상황이 잘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었음

## □승의여자고등학교

### [양호 / 권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면서도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서류도 잘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지침에 맞게 잘 되어 있으며, 회의록과 회의 자료도 잘 구비되었음

○학생 장학금 지급이 학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선발되고 있었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아 필

요한 기자재(학생용 크롬북) 구매를 적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이를 수업에 활용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음

○학교 물품 대장의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보존 기간 및 업무 활용 종료에 따라 폐기 처리도 절차에 따라 잘 시행되고 있음

○보건실 약품 수불부 대장이 잘 비치되어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음

#### □승의여자대학교

○ 승의여자대학교 교비회계 대한 감사

/ 별첨2 -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 [양호 / 권면]

○교직원 임용에 따른 인사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인사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

○교직원인사기록카드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승급, 보직 변경 등이 잘 반영되어 있음

○학술연구비운영은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신청으로부터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논문 제출과 연구비 지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잘 처리되고 있음

○평생교육원 운영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교강사의 출강부 관리는 물론 학점 관리도 잘 되고 있었음

○교수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및 물품 인계·인수 처리가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고, 서류 보관도 잘 되어 있음

○신규 총장 인계·인수가 규정에 맞게 이뤄졌고, 서류 또한 잘 구비되어 보관되고 있음

◇직원 채용에 따른 서류 및 면접 전형 기준표에서 일부 주관적 평가 항목을 보다 객관화하고 세분화하여 평가 점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 회계연도 2021 년 3월 1일부터 2022 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등기오류 자산의 검토</p> <p>가. 학교법인 승의학원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확인간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3” 건물 등기 내 소유권관련 사항에서 “소유자: 학교법인 중의학원, 주소지: 중구 예장동 8” 로 기입되어 있어 오류가 있음을 확인함</p> <p>나. 당 승의대학교의 일부 체육관, 유치원, 식당, 학생회관이 공사가 진행 완료되어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 기관에서 준공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진행되지 못함.(소송진행중)</p> <p>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요청</p>	<p>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등기오류 자산의 시정조치계획</p> <p>가. 등기부등본 상 오류사항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조치 하도록 하겠음</p> <p>나. 당 승의여자대학교의 미등기자산의 경우 1965년부터 1984년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관할청의 건축 허가로 건축한 건물이지만 건물 준공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물 부지 위치가 풍치지구인 관계로 건물 준공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등기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였음.</p> <p>미등기자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임</p> <p>본 지적건이 포함된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미등기자산의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	직인 (사인)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div>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 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2. 이사회 조직이 학원 정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사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음.</p> <p>3. 이사회는 규정대로 항상 7일 이전에 항상 소집되었고, 회의 진행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p> <p>4. 이사회 회의록 작성은 규정대로 되어 있으며, 참석 위원들의 서명이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공개되었음</p> <p>5. 이사회 소집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의안이 부의되어 심의 의결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음</p> <p>6. 각 학교에서 제청된 교원 임면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정관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되었음</p> <p>7. 이사회 안건 중 위원의 제척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었음</p>	<p>2. 특이사항 없음</p> <p>3. 특이사항 없음</p> <p>4. 특이사항 없음</p> <p>5. 특이사항 없음</p> <p>6. 특이사항 없음</p> <p>7. 특이사항 없음</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	직인 (자인) 

##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21회계연도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승의여자대학교 결산서의 검토</p> <p>가. 승의여자대학교 결산서상 반영된 당기 홍보비 지급분중 일부건은 20년도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건이 존재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 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학교가 지급의무를 명확하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로 적절히 보고되어야 함)</p> <p>나. 결산서상 미수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사학기관 운영규칙인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에서는 발생주의라는 표현이 없으며 미수수익 회계의 계정과목 또한 특례규칙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선급비용, 미지급비용등의 계정은 별도로 결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바, 계정별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p>	<p>가. 결산서에 반영된 당기 홍보비중 20년도 지급의무가 있는 건 -홍보비중 일부 건은 당해 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져 현금주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음. 매년 반복되는 홍보비가 20학년도는 단일 회계연도에 원인행위가 끝났음. 결산 시점에 원인행위가 발생한 부분은 미지급으로 반영토록 하겠음</p> <p>나. 결산서상 미수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있음</p> <p>특례규칙에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언급되기 이전부터 일반 기업회계 원칙에 의거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성에 원칙에 따라 매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특례규칙에 따라 해당계정을 반영토록 하겠음</p>
<p>피감사기관장 <b>승의여자대학교</b> 총장 <b>박성희</b> 직인 (사인)</p>	

